

-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제안설명서

2024. 7.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도시디자인과]

# 제안 설명서

설명자 : 도시디자인과장

달서구 상인2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내용 및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의견청취안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키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 승인·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해당 계획안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이번에 제안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지역 상인2동 일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중입니다.  
특히, 상인역 중심으로 한 가로상권 및 최근 2~3년 내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었으나 주차장 등 생활편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주변 도심과 정주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상인2동 일대를 재활성화 시키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 지역의 차별화된 잠재력과 문화를 활용한 도새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 하반기 공모지침에 따라 9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 상인2동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지원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마련하여 생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 질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마을로 재창조하고자 합니다.
-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는  
 “넘치는 활력으로 함께 웃으며 채워하는 新 골목상권” 으로  
 쇠퇴한 구도심에 특색있는 새로운 콘텐츠 접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마을 활력을 불어넣어 생동감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자,  
 골목상권 확산의 중심지, 다양한 사람과 기회를 만나는 환경,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 제공, 그리고 주민·청년·상인이 전문가와 함께 성장하는  
 상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골목상권 특성화사업,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을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먼저 골목상권 특성화사업입니다.

주민, 예비창업자, 상인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  
창업상생교류 거점 건립,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범상가·어르신일자리거점 등  
창업기반 거점 조성,  
특색있는 경관시설물·미디어폴 등을 설치하여 활기찬 골목상권  
활성화가로 조성 및 골목점포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들레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과 공원 리모델링으로 생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스마트 주차장·폴·보안등 등 스마트 안전망 등을 구축하여 앞서  
가는 스마트시티 및 보행환경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요 도로 및 골목에 온도저감을 위한 도로 열차단 포장,  
쿨링 포그 설치,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여 폭염 대비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 이 외에도 민간과 연계하여 젊은 계층 유입을 위한 청년주택 건립,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생활 SOC를 조성코자 합니다.

○ 이러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회 구 의회 의견 청취를, 8월 주민 공청회를 거쳐  
9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0092 4079
----------	--------------

제출일자 : 2024. 7.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도시디자인과장)

## 1. 안건명: 상인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 2. 제안이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 쇠퇴한 상인2동 지역을 재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제안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4. 제안내용: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 5.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가. 위치/면적: 달서구 상인2동 일원 / 502,504m<sup>2</sup>



### 나. 추진경과/일정

- |                 |                      |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작성 | : 2022. 12.~2024. 6월 |
| ○ 구의회 의견 청취     | : 2024. 7월           |
| ○ 주민공청회 개최      | : 2024. 8월           |
| ○ 공모 신청         | : 2024. 9월           |
| ○ 대구시, 국토부 평가   | : 2024. 9.~11월       |
| ○ 사업선정·발표(국토부)  | : 2024. 12월(예정)      |

## 다.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 비 전: 넘치는 활력으로 함께 웃으며 채워가는 新 골목상권
- 목 표
  - 골목상권 확산의 중심지
  - 다양한 사람·기회를 만나는 환경
  - 주민·청년·상인이 전문가와 함께 성장하는 상업환경 구축
- 추진방향
  - 골목상권 특성화사업,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 라. 주요 사업계획안

### ○ 골목상권 특성화사업

- 창업 상생교류거점, 창업기반 거점 조성
  - 주민, 예비창업자, 상인들의 창업 준비·소통·교류공간 및 활동거점 공간 조성
  - 창업 지원을 통한 시범상가 및 어르신일자리 거점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 일차리 창출
  - 자생적 상권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 공공 + 대학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TF팀 추진
- 골목상권특화가로 조성
  - 상인역, 롯데시네마, 대동시장, 월배공원 등 사업대상지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특화가로 조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 ○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 민들레어린이공원 주차장 복합화 사업
  -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 리모델링 복합 조성하여 주차수요 대응 및 공원 편의시설 확대

- 상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 주요도로 중심으로 스마트 폴·보안등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 정온화를 통한 상권 보행환경 개선
- 폭염대비 온도저감을 위한 골목길 열차단 포장, 스마트 쉼터 설치로 안전한 상업환경 조성

○ 청년사회주택 조성사업(민간)

- 청년주택 건립, WORK + LIVE + PLAY 복합거점 조성
- 어린이 및 청소년 SOC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붙임 : 1. 관계법률

## 붙임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전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